

1. 개정이유

소방장비 인증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인증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를 장비의 종류·특성 등을 고려해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관리하고 있는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소방활동 환경변화에 시의적절하게 조정토록 소방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기관이 인증하는 소방장비 범위를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 효율적 인증을 위해 장비의 종류, 특성 등 고려하여 유사 품목별로 정함
나.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개선(안 제16조)

○ 시·도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보유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다. 소방장비의 관리·운용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기록·관리토록 함(안 제17조)

○ 소방장비의 일일점검, 주간점검 등의 서식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 2호의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는 장비의 종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이 포함되도록 하되,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서 갖추어야 하는 소방장비의 표준적인 사항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② 소방자동차에 적재하는 소방장비는 소방자동차별 최대적재량(「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별 상황에 적합하게 적재해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④ 시·도지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각각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서식”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된 것은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인이 1 이 규칙에 의하여 인증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규칙에 의하여 인증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생략) <u><신설></u>	제11조(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 2호의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소방장비의 범위는 장비의 종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한 품목이 포함되도록 하되,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u>
<u>② ~ ⑤</u> (생략)	<u>③ ~ ⑥</u> (현행 제2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16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별 <u>제2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의 보유기준” 이란 별표 2의 소방장비의 보유기준을 말한다.</u> <u><신설></u>	제16조(소방장비의 보유기준) ① <u>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서 갖추어야 하는 소방장비의 표준적인 사항은 「소방력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u> <u>② 소방자동차에 적재하는 소방장비는 소방자동차별 최대적재량(「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별 상황에 적합하게 적재해야 한다.</u>
<u><신설></u>	<u>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u>

<신 설>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①
(생 략)

②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별 관리 및 운용사항을 각각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소방장비 보유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소방장비의 관리기록) ①
(현행과 같음)

② -----

-- 소방청장이 정하는 서식 ---

-----.